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2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국립농업과학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조정관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립농업과학원 발농업기계화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농업인 안전보건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지식정보화담당관·고객지원담당관 및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을 두되,”를 “밑에”로, “고객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수의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수의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을 “고객지원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수의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수집·관리”를 “수집·분석 및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저감”을 “평가·저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농작업 안전보건 기술개발”을 “농업인의 직업건강”으로 한다.

1.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기술 개발

별표 9의2 1)을 삭제하고, 같은 표 2)부터 4)까지를 각각 1)부터 3)까지로 하

며, 같은 표 2)(종전의 3))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표 3)(종전의 4))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9월 30일”을 각각 “2023년 9월 30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1년 11월 30일”을 “2024년 11월 30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따라 제4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 및”을 “따라”로, “2021년 10월 31일”을 “2024년 10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 음)
② <u>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 당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지 식정보화담당관 · 고객지원담당 관 및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 정법무담당관 · 지식정보화담당 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은 부이사 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 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 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빅데 이터일자리팀장은 서기관 · 기 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업사 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 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 촌지도관으로 보한다.</u>	② ----- <u>밑에</u> ----- ----- ----- ----- ----- ---- <u>고객지원담당관을 두되, 각</u> <u>담당관은 부이사관 · 서기관 ·</u> <u>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u> <u>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u> <u>관 · 환경연구관</u> ----- ----- ----- ----- -----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u>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장은</u> <u>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u> <u>을 보좌한다.</u>	<u><삭 제></u>
1. <u>농업 빅데이터 수집 · 분석</u>	

<u>기반 구축 및 운영</u> <u>2. 농업 빅데이터 분석·활용</u> <u>모델 개발 및 확산</u> <u>3. 농업과학기술 통계분석 지원</u> <u>4. 청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u> <u>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점</u> <u>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u> 제15조(농업공학부) ① ~ ⑦ (생 략) ⑧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신 설></u> 1.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에 필 요한 통계의 <u>수집·관리</u> 2. 농작업 유해요인 <u>저감</u> 및 예 방관리시스템 개발 3. <u>농작업 안전보건 기술개발</u> 및 안전인식 제고 등에 관한 연구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6호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	제15조(농업공학부) ① ~ ⑦ (현 행과 같음) ⑧ ----- -----. 1. <u>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기술</u> <u>개발</u> 2. ----- ----- <u>수집·분석 및 관</u> <u>리</u> 3. ----- <u>평가·저감</u> ----- 4. <u>농업인의 직업건강</u>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6호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 ① -----
---	---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발농업기계화연구팀은 <u>2021년 11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제4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 및 제15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농업인안전보건팀은 각각 <u>2021년 10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지식정보화담당관이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③ (생략)	----- ----- ----- --- <u>2024년 11월 30일</u>----- ---. ②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 따라 ----- ----- ----- --- <u>2024년 10월 31일</u>----- ---. <삭 제> ② (현행 제3호와 같음)
---	---